

200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

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과 금연정책의 전망

2006.4. 21

보건복지부 봉건정책팀 사무관 조경숙

I. 서론

〈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 배경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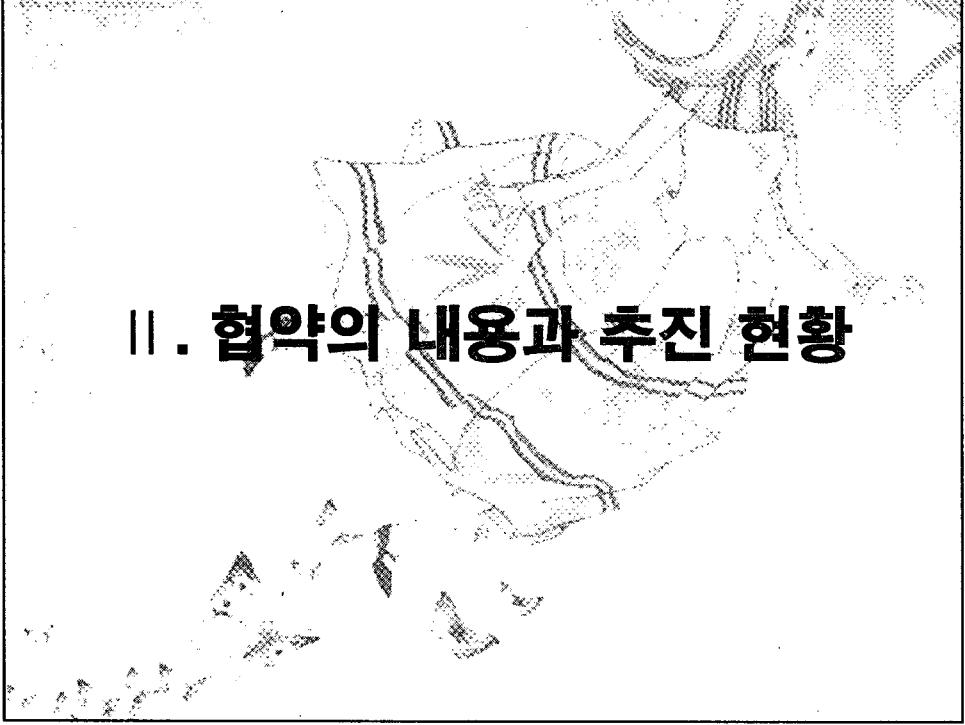
- 흡연의 폐해가 알려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, 여전히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적인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
- 전세계 흡연인구 12억명, 매년 흡연으로 500만명 사망, 2030년에는 1천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(WHO, 2004)
- 전체 흡연자의 80%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므로 향후 이들 국가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할 전망, 선진국도 예외는 아님
- 최근 무역 자유화, 글로벌 마케팅, 위조 및 밀수담배의 거래, 초 국경간 담배광고 등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됨에 따라
- 각국의 흡연규제정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경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흡연 문제는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

2 보건복지부

〈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 경위〉

- 1998년 WHO는 Tobacco Free Initiative 조직
- 1999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,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)을 추진
- 2003년 5월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안 통과(2차례 실무회의, 6차례 협상회의)
-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년간 공식적인 서명 절차 가진 결과, 192개국 중 168개국이 서명하였고, 120여개국이 비준
* 우리나라 2003. 7. 21 서명, 2005. 5. 16 비준(66번째국가)
- 2004년 11월 30일 40번째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 27일에 정식 국제 법으로 효력 발생
- 2004년 6월, 2005년 2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간 작업반 실무회의 개최(재정 및 행정규칙)
- 2006년 2월 첫번째 당사국 총회 개최

2 보건복지부



II. 협약의 내용과 추진 현황

〈협약의 구성 내용〉

- 전문 : 담배의 폐해 인식, 국제협력의 중요성, 담배업계에 대한 경계, 협력과 참여, 협약의 이행 시 개발도상국·아동·여성·청소년·원주민 등에 대한 고려, 담배 불법거래, 광고·판촉·후원의 악영향에 대한 고려 등을 상기
- 협약의 본문은 11개의 장과 38개의 조항으로 구성
- 주요 내용 : 담배규제를 위한 담배수요 감소 조치와 담배 공급 감소 조치
 - 담배수요 감소조치: 가격 및 조세정책, 간접흡연 노출로 부터의 보호정책,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,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, 담배광고·판촉·후원 규제, 금연 교육·홍보 및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
 - 담배공급 감소 조치 :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금지,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, 담배산업 종사자의 대체활동 지원 등
 - 기타 : 환경보호, 담배회사의 책임, 정보교류 및 협력, 협약 당사국의 재정 및 행정규칙

2 보건복지부

1. 담배의 수요감소 조치

가. 가격 조치 : 가격 및 조세(제6조)

- 협약 내용
 - 조세정책과 가격정책
 - 국제 여행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세·무관세 담배제품의 판매·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
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담배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한 가격 인상은 사실상 어려움
 -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(표 1)
 - * 2004년 12월 30일 조세와 부담금 등을 인상하여 담배 가격을 감당 500원 씩 인상
 - 면세 담배 폐지
 - * 200원 이하의 저가담배 공급중단('06.7.1 예정)
 - * 2009년까지 구 면세 담배의 단계적 폐지

☞ 보건복지부

조 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 6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가격 및 조세정책 <예시사항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· 면세·무관세담배의 판매· 수입 금지 또는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담배판매가격신고제 (담배사업법제18조)○조세 및 부담금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, 지방세법 제229조 및 제260 조, 담배사업법시 행규칙 제17조, 자 원의 절 악과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시 행령 제18조, 부가 가치세법 제1조○면세담배(지방세법 제22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담배가격 인상 · 담배가격 500원 인상 ('04.12.30)· 500원 추가 인상 추진(국 회계류 중)○면세담배 일부 폐지 · 200원 이하 저가 담배의 면세조치 폐지('06.7.)· 군면세담배의 단계적 폐 지('06.09) 합의('05.8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담배가격 인상 ·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마련 필요○면세담배 폐지 및 규제강화 · 군뿐 아니라 전경 등에 제공 하는 면세담배도 폐지· 면세점 등의 담배에 대한 면세조치도 규제

☞ 보건복지부

표1.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현황

구 分	'04인상전	인 상분	'04인상후	'05인상후	근 거
조 세 및 부 담 금	건강증진기금	150	204	354	558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
	담배소비세	510	131	641	772 지방세법 제229조
	지방교육세	255	66	321	387 지방세법 제260조
	업연초생산안정화기금	10	5	15	2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
	폐기물부담금	4	3	7	10 자연의질약화비용증액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
	부가가치세	136	41	177	218 부가가치세법 제1조
	소 계	1,065	450	1,515	1,965
유통마진	150	50	200	250	
제조원가	285	0	285	285	
담배가격	1,500	500	2,000	2,500	

◎ 보건복지부

표 2.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 및 금연율

단위 : %

구분	2004. 9월/ 담배가격인상전	2005. 1월 말/ 담배가격인상 1개월후	2005. 3월 말/ 담배가격인상 3개월후	2005. 6월 중순/ 담배가격인상 6개월후	2005. 9월 중순/ 담배가격인상 9개월후
금연율(고려대)	-	8.3%	9.7%	11.0%	-
흡연율(결 협)	57.8%	-	53.3%	52.3%	50.3%

자료 : 1) 김원년 등. 금연정책의 분석에 관한 연구. 고려대학교. 2005

2) 한국갤럽. 흡연실태 조사 보고서. 2004.9, 2005.3, 2005.6, 2005.9

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

- 금연율 : 11.7%(성인 11.0%)
- 흡연량 감소 : 20.5%
- 담배수요 가격탄력도 : -1.56(성인 -0.39)

◎ 보건복지부

나. 비가격 조치

가)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(제8조)

• 협약 내용

- 실내 작업장, 대중 교통수단, 실내 공공장소,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

• 현황 및 조치 내용

-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당시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한 이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
- 정부청사, 보육시설, 학교, 대형건물의 사무실, 공연장, 학원, 대규모 점포, 관광숙박업소, 실내체육관, 의료기관, 사회복지시설, 교통시설관련, 게임방·PC방, 대형음식점 등에 금연구역 설치

* 최근 지방청사와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추진 중

☞ 보건복지부

조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8조	○실내작업장, 대중교통, 실내 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	○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조 및 제7조(금연구역 이용하는 시설) · 학교, 보육시설, 의료기관, 교통시설, 체육시설, 중앙청사, 대형 사무실, 극장 등	○1995년 제정 · 2003년 개정 ○2006년 개정 : 금연구역 확대 · 지방청사, 소규모 사무실, 공장 등에 확대(‘06. 상반기 예정)	○금연구역 확대 ·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· 실외 공공장소까지 확대

☞ 보건복지부

나)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(제9조 및 제10조)

- 협약 내용
 - 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을 시험·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배출물을 규제
 -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조치
 - * 협약 당사국 총회는 앞으로 담배 성분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
 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 이 외의 다른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규제는 없음

보건복지부

조 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 9 조	○ 담배제품의 성분·배출물에 대한 시험·측정 및 규제	○ 담배사업법 제25조 의 2(담배성분의 표시) 제2항·제3항 및 등 법시행령·시행규칙 의 관련 규정 · 측정기준지정·표시 방법·및 협약으로 협정·측정기준 등		○ 향후 WHO에서 담배성 분규제 및 공개를 위한 지침 마련 후 강화될 전망
제 10 조	○ 담배 제조·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 성분·배출 물에 대한 정보 공개	○ 담배사업법시행규 칙 제16조의 4(측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 ○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2(담배제조업 자에 담배성분 공개) · 담배내기비의 연기 성분에 포함된 니 코틴 및 타르의 함유량		- 상동 -

보건복지부

다)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(제11조)

- 협약 내용(3년 이내 시행)
 - 허위·오도·기만적이거나, 제품의 특성, 건강에 대한 영향,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해서는 안됨
 - * 오도문구 (저타르, 라이트, 마일드 등의 용어) 금지
 - 담배제품의 갑포장, 뮤음포장,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 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
 - 경고문구는 주요면적의 30%를 의무화
 - * 50% 이상의 크기 및 경고 그림 권고
 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담배갑 앞·뒷면 각각 30%의 넓이에 해당하는 사각형 안에 각각 1개씩의 경고문구를 기재

☞ 보건복지부

조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 11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담배제품의 포장(unit pack 및 packaging 포 함)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 발효 3년 이내 의무사항 ◦ 오도(저타르·라이트·울트라라이트·마일드 등) 표시 금지 ◦ 경고문구(표시면적 30% 이상, 주기적 문구교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고사항: 50% 이상 표기, 그림 경고표시 ◦ 담배 분·배출물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민 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제25조제1항(담배갑 앞면 30%에 1개씩의 경고문구 표기) ◦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(오도 가능성 표시 관련) ◦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(성분표시), 니코틴·티로양 표시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담배갑 포장뿐 아니라 외부 포장에 대한 표시 규제도 필요 ◦ 오도문구 규제 관련 조치 필요 ◦ 출연경고 그림, 주기적 문구교체 등 출연경고 표시 강화

☞ 보건복지부

라) 담배광고, 판촉 및 후원(제13조)

- 협약 내용(5년 이내 시행)
 - 담배광고·판촉·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또는 규제
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
 - 담배의 포장과 그 내용을 바꾸어 판매하는 것 금지
 - 원칙적으로는 담배에 관한 광고·후원을 금지·제한

<허용되는 범위>

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·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,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,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됨

☞ 보건복지부

조 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 13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담배제품의 광고·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(협약 발효 후 5년 이내) ·의무사항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도 가능성 있는 광고·판촉 및 후원 금지 ·광고(판촉·후원 포함) 시 경고 문구 포함 ·직간접적 유인책 규제 ·담배업계의 광고·판촉·후원 비용을 정부에 공개 ·TV 등의 광고·판촉·후원의 포괄적 금지 또는 규제 ·국제 행사·활동 등에 대한 후원 금지 또는 규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금지 등) ○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항 및 제8조제3항(담배사업법 제26조): 담배광고금지·제한 및 광고시 경고문구 표시원칙 규정 ○담배사업법 제26조의4(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 금지) ○비용 공개규정없음 ○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(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를 제외한 사회·문화·음악·체육 등의 행사 후원 허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담배제품의 광고·판촉 및 후원에 대한 일부 규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담배회사의 광고·판촉·후원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○담배업계에 대한 비용 공개를 요구할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

☞ 보건복지부

마) 금연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(제12조 및 제14조)

- 협약 내용
 -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
 - 보건 관계자, 지역사회 운동가, 사회 활동가, 미디어 전문가, 교육자, 정책결정자, 행정관료 등에 대한 교육 훈련
 - 공공, 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인식과 참여 권장
 - 담배중독 치료를 위한 진단·상담·예방·치료 프로그램 제공
 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학교, 사업장, 군대,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
 - 금연상담과 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
 - 어린이·청소년·대학생·여성 등 목표 집단을 세분화하여 TV, 인터넷,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전개
 - 보건소 금연클리닉, 금연상담전화(Quitline)
- * 예산 증가: 7억('98년)→260억원('05년)→315억('06)

② 보건복지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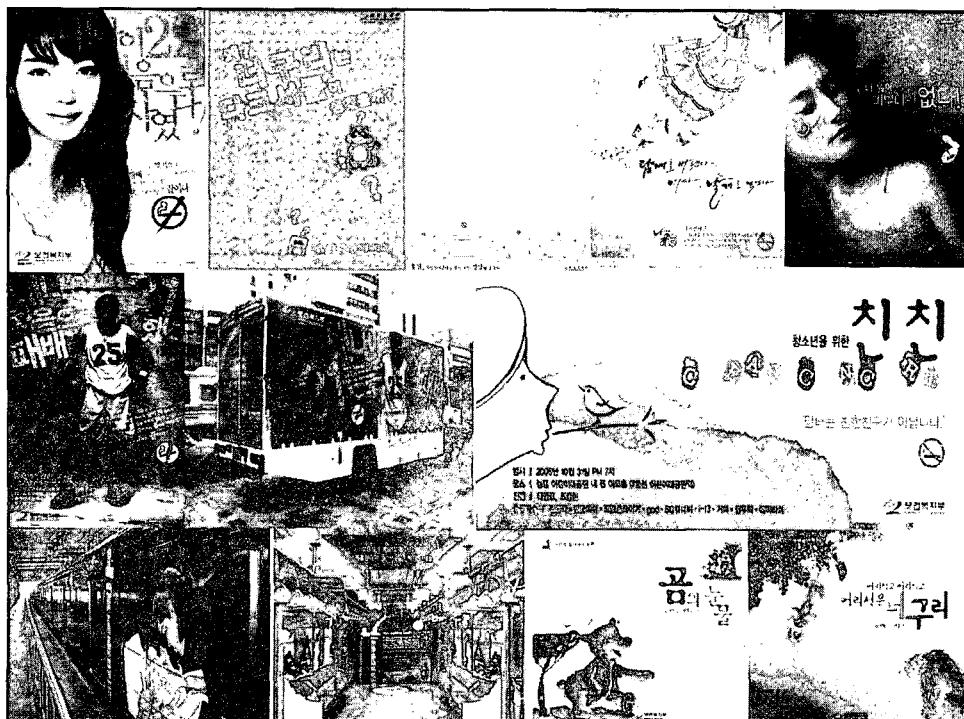
조 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제 12 조	○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시행	○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25조 ·금연 교육·홍보 ·금연사업	○금연사업 예산 확대: 7억('98)→ 260억('05)→315억('06) ·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 교육·홍보프로그램 확대('05) ·전문가 교육·훈련프로그램 등	
제 14 조	○담배 중독 치료·금연을 위한 조치 시행	○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 ·금연사업	○금연클리닉 사업화('04) →246개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사업('05, 20만명) ○사업장, 학교, 군 등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	○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의 민간 확대 방안 마련 ·부드로피온 보험급여 검토

② 보건복지부

<대상자별로 세분화한 홍보·교육>

구 분	아동		청소년		청년		성인			간접 홍보
	유치 원생	초등 학생	중학 생	고등 학생	대학 생	군인	여성 흡연 자	초기 흡연 자	니코 틴증 독자	
교 육	TV·라디오 공익 광고									
	기타 옥외매체 광고					금연치하원, 담배소매점POP,				
	방송프로그램·캠페인									
	포스터·리플렛 등 인쇄매체	금연동화, 순회 인형극	학교홍보대방사업 콘서트	금연 축제	군금연 교육	내비김 페인				담소 대점등
	인터넷(금연길라잡이)									
	금연클리닉									
	금연상담전화									

2 보건복지부



2. 담배의 공급감소 조치

가.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(제15조)

- 협약 내용
 - 담배의 밀수·불법제조 및 위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관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
 - 이를 위해 원산지 표기와 공급의 추적체계 마련, 허가제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하는 조치 등 권장
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나 관세법에 의해 위조 및 밀수담배를 규제 가능
 -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제조·수입·도매업이 허가제로 되어 있고, 우편 및 전자거래 금지

☞ 보건복지부

나.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(제16조)

- 협약 내용
 -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(필요 시 연령 확인)
 - 선반 진열과 같이 직접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판매 금지
 - 자판기에 대한 접근 규제, 무상배포 금지, 낱개 또는 소량 포장 판매 금지, 담배제품 형태의 물건 판매 금지 등
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(필요 시 신분증 확인)
 -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지역(학교 등)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,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

☞ 보건복지부

다. 대체 활동 지원(제17조)

- 협약 내용
 - 담배업계 노동자·경작자 및 개별 판매업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 활동을 촉진
- 현황 및 조치 내용
 - 담배사업법에 의한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: 대체활동 지원보다는 담배경작자의 잎담배 수매 지원
 - *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: 담배 한갑 당 15원

보건복지부

조항	주요 내용	국내 법령 및 내용	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	향후 방향 및 제언
담 배 공 급 감 소 조 처	○ 담배제품 원산지 표기 ·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기재 · 주적 체계 개발 검토 ○ 위조, 일수 등 불법 거 래 규제 · 생산·유통 등 통제	○ 관련 규정 미흡 ○ 관세법 제236조 및 제269조(위조·밀 수담배) · 담배사업법 제11조, 제13조, 제16조(제 조·수입·도매업허 가제·소매인지점제, 우편 및 전자거래금지)		○ 판매지역 명기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
	○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제품 판매 금지 <예시사항> · 판매업자의 판매금지 표 시 및 증명서 제시 요구 · 직접 접근 가능한 방식 의 판매 금지 · 자판기에 접근 금지 · 무상 배포 금지 · 날개 또는 소량 포장 판매 금지 · 담배제품 형태의 물건 판매 금지	○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(청소년 유해 악물(담 배포함)의 판매·대 여·배포 금지) · 통령령 시행령 제20조(연령 확인 의무) ○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(자판 기 설치 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) ○ 담배사업법 제20조 (담배의 포장 및 내 용 변경 판매 금지)		○ 담배전염병 접근 규제, 담배형태의 물건 판매 구 제 등에 관한 관련 규정 강화 필요
	○ 담배업계 노동자·경 작자(개별 포함 가능)의 대체 활 동 촉진	○ 담배사업법 제26조 와 3 및 통령령 규칙 제17조(엽연초 생산안정화기금)	○ 담배가격 500원 인상으 로 감당 10원→16원으 로 인상(04.12.30) · 담배경작자 보호	○ 담배노동자 및 소매업자 의 전업 등 유도 필요

보건복지부

3. 환경보호 책임 정보교류 등

- 협약 내용**

-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 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
- 담배의 규제를 위하여 보상을 포함하는 형·민사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의 기존 법률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
- 당사국간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

▣ 보건복지부

4. 협약의 행정 및 재정규칙

- 기본적으로 WHO의 행정 및 재정규칙에 따름

- 협약 상설 사무국은 WHO 내에 설치

- 의사결정

- 투표권은 비준을 완료 후 90일이 경과한 당사국에 한함

- 당사국은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4분의 3의 동의에 의한 의사결정, 예산 및 재정에 관한 한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

▣ 보건복지부

- 옵저버의 참석

- 협약 당사국이 아닌 WHO의 회원국과 WHO의 준회원국,

- UN 회원국, UN 특별기구의 회원국,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당사국 회의(public session)와 당사국 하부

- 기구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, 발언은 당사국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 가능

- 옵저버로 참석하기 원하는 NGO는 사전에 사무국에 신청

- 하고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투표권 없이 협약 당사국 회의(public session)와 당사국 하부기구의 회의에 참석, 발언은 위에서 언급한 옵저버의 발언이 끝난 후 가능

☞ 보건복지부

- 첫 번째 회계기간(2006-2007)의 예산은 총 US\$ 8,010,000으로 이는 당사국 회의 개최 (US\$ 2,100,000), 보고체계 마련 및 이에 대한 지원 (US\$ 2,500,000), 보고서 작성 (US\$ 665,000), 협약 관련 하부기구 운영 및 행정 지원 (US\$ 1,180,000), 가이드라인과 의정서 마련 및 기타 활동 (US\$ 1,565,000)에 소요될 전망, 각국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담
- 우리나라는 총액의 2.78175%인 US\$ 222,818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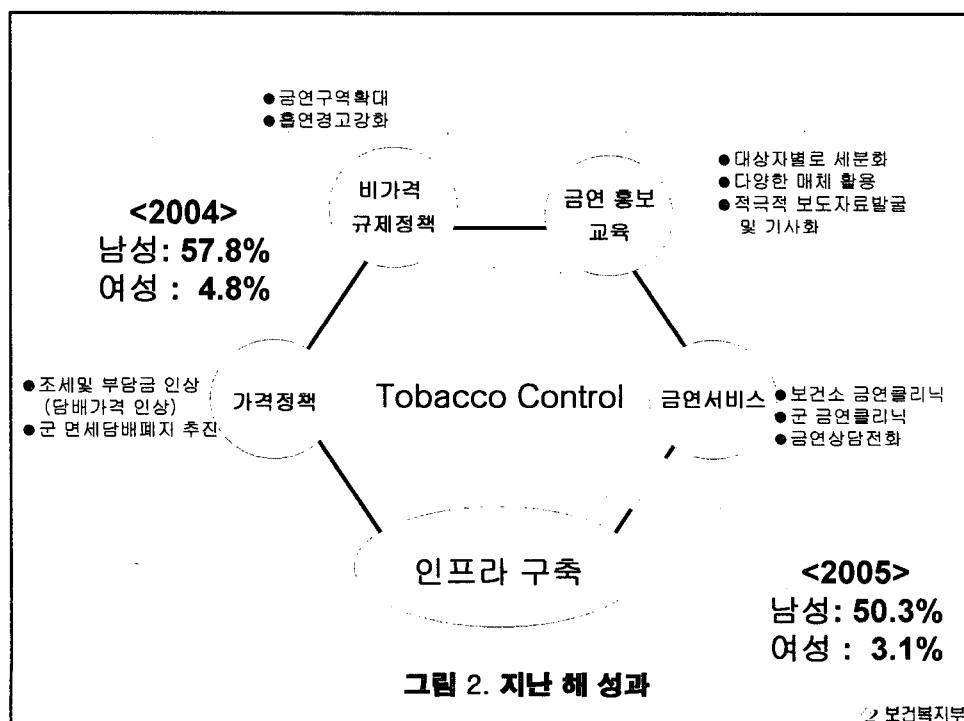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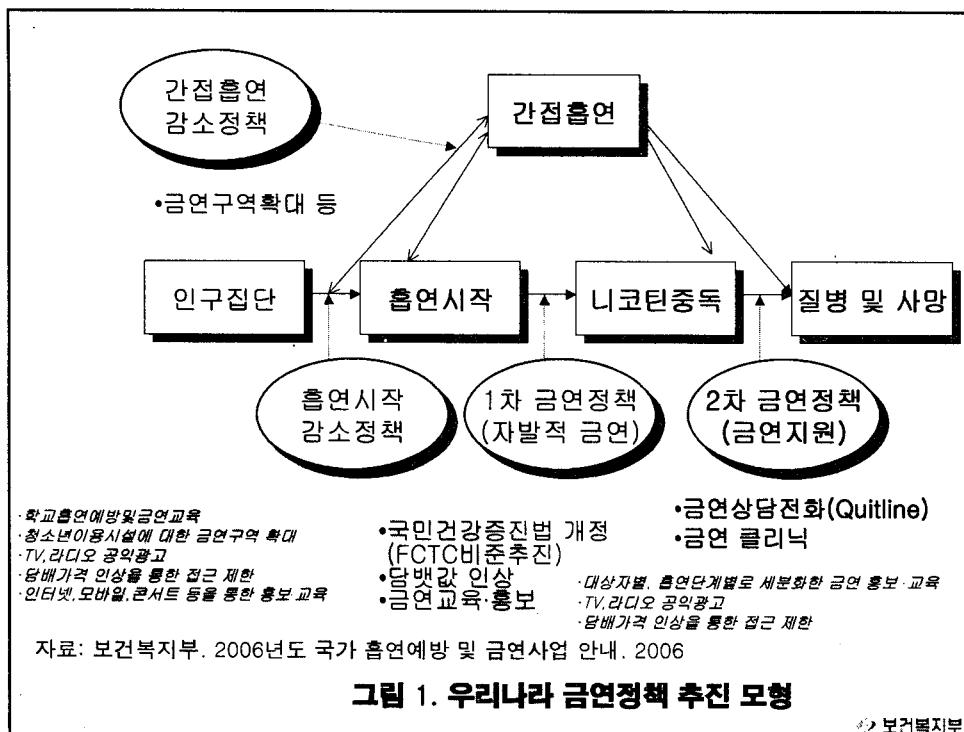
☞ 보건복지부



III 향후 과제 및 전망

1. 정책의 목표 및 방향

- 목적 : 흡연을 예방하고,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,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- 목표 : 201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30%까지 낮춘다
- 세부 목표
 - 흡연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, 흡연 시도 평균연령을 높이고, 흡연시작 평균 연령 높인다
 -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, 금연시도율과 금연결심율을 증가시키며, 금연상담 또는 치료경험율을 높인다
 -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며, 간접흡연으로 인한 노출율을 감소시킨다



2. 담배의 수요감소 조치

- 가격정책
 -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
 - 면세 담배 폐지 조치
 - * '09년까지 단계적으로 군 면세담배 폐지,
 - * 이 외의 면세 담배(전투경찰 공급, 면세점)의 폐지 방안 마련
 -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
- 간접흡연 감소 조치
 -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 확대
 - 실외 공원, 놀이동산, 실외 체육시설 등 옥외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 강화

2 보건복지부

-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: 흡연경고표시 강화
 - 경고문구 교체 개재
 - 흡연의 폐해에 관한 명확한 내용 개재
 - 사각형 태두리와 글씨를 담배갑 포장지와 보색인 색상을 이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방안 마련
 - 현행 30% 비율로 규정된 사각형의 크기를 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비율인 50%로 확대, 경고그림 넣는 방안 마련
 -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담배갑에 표시
 - 오도문구(저타르, 라이트, 마일드 등) 규제 방안 마련
 -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·묶음포장·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 마련

2 보건복지부



- 담배광고·판촉·후원 규제 및 담배성분 공개 강화
 - 담배의 광고·후원·판촉행위의 포괄적 규제
 - 담배성분 공표 및 감시
- 금연 교육·홍보 및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
 - <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·교육 강화>
 - 여성·아동·청소년·대학생·군인 등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금연홍보·교육 강화
 - 이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
 - <금연 상담·치료 서비스 확대>
 -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
 - 민간의료기관의 금연 상담·치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
 - (부프로피온 건강보험급여 방안 마련 등)
 - 금연 상담전화(Quitline)의 차질없는 운영 및 확대
 - 보건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위한 참여 방안 마련

보건복지부

3. 담배의 공급 감소 조치 등

-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
-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 강화
- 담배경작자·판매인 등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
- 책임(담배소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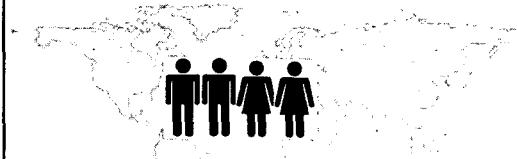
2 보건복지부

4. 담배규제를 위한 역량 강화

- 정부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
- 모니터링·연구 활성화
 - 흡연관련 조사·통계 강화를 통한 정책 수립 및 평가
 - 흡연관련 연구의 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
 - 청소년 담배판매행위, 금연구역, 담배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- WHO, CDC 등 국제기관과 협력 강화
- NGO 연대를 통한 담배산업 견제
 - 보건의료인, 지역사회운동가, 사회 활동가, 미디어 전문가 등의 참여 강화
 - 담배규제에 있어 공공, 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

2 보건복지부

<2001년>



성인 남자 : 61.8%
성인 여자 : 5.4%

<2010년>



△ 보건복지부

“담배없는 세상을 위하여...”



- 감사합니다 -

△ 보건복지부